

특별공급요약

구분		기관추천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노부모부양
청약자격	주택소유	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0.05.29)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			
	기본자격	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자	미성년 자녀 3명이상	-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- 소득기준 필요 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이하 (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30%이하) ※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페이지 참조	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
세대주 여부	무주택세대구성원			무주택세대주	
청약가능 면적	74㎡, 79㎡, 84㎡	74㎡, 79㎡, 84㎡, 97㎡	74㎡, 79㎡, 84㎡	74㎡, 79㎡, 84㎡, 97㎡	
청약통장 종류	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				
청약통장 요건	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※기관추천: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제외			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※1순위 요건 적용	
재당첨 제한	당사업지 재당첨 제한 미적용				
접수방법	-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함. 단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 - 한국감정원 청약홈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신청 가능(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)				
예비입주자	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% 선정				
기타	-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 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 (특별공급 + 특별공급) 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단, 특별공급 + 일반공급은 청약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무효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(소형·저가 주택 포함)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-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(기관추천, 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 동일 타입)로 동일 타입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 선정 - 예비입주자 선정: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				
청약예금의 예치금액	구분	경기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
	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	
	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600만원	400만원	
	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1,000만원	700만원	
	모든면적	500만원	1,500만원	1,000만원	

※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☎ 1877-3447로 문의바랍니다.